



2024.12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 최종 결과 보고서 |



## 제출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발주처	인천광역시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구원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수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서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b>I . 연구개요</b>	<b>1</b>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b>II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현황</b>	<b>3</b>
1. 지방보조금 개요 .....	3
2.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	7
<b>III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b>	<b>14</b>
1. 운용평가 개요 .....	14
2. 운용평가 결과 .....	16
<b>IV . 지방보조금 정책 제언</b>	<b>25</b>
1. 지방보조금 계획 및 편성 .....	25
2. 지방보조금 집행 .....	29
3. 지방보조금 정산 .....	32

표 목차

[표 1] 예산과목별(편성목) 분류 .....	3
[표 2]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7
[표 3] 연도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8
[표 4] 특별/광역시 17개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9
[표 5] 특광역시 8개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10
[표 6]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	11
[표 7] 지방재정분석의 지방보조금 지표 현황 .....	13
[표 8]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조항 .....	14
[표 9] 「지방보조 관리기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조항 ..	15
[표 10]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등급별 비율 및 활용 .....	15
[표 11]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 사업: 통계목별 .....	16
[표 12]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 사업: 부서별 .....	17
[표 13]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통계목별 .....	18
[표 14] 성과평가 사업계획 분야 평가결과 .....	19
[표 15] 성과평가 사업관리 분야 평가결과 .....	20
[표 16] 성과평가 사업성과 분야 평가결과 .....	21
[표 17] 2023년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통계목별 .....	22
[표 18] 유지필요성 평가 분야별 평가결과 .....	24
[표 19] ‘지방보조금 항목’ 반영률 .....	25
[표 20] 시흥시 지방보조금 총액인건비 적용 현황 .....	27
[표 21] 지방보조금 유사·중복 평가 기준 .....	28
[표 22] (샘플) 지방보조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	30
[표 23]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 조건 비교 .....	34
[표 24] 중요재산 관리 .....	35

그림 목차

[그림 1] 강릉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처분 내용 .....	33
--	----

## I. 연구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저하 및 지방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반면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재정 건전성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기됨.
- 지방보조사업 집행 후 매년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 일률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음.
- 성과평가 결과의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엄정한 예산 환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세출 예산 항목 중 하나인 지방보조금은 경로의존성이 강해 사업의 일몰이 쉽지 않은 경향이 강함. 이러한 특징인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해 다양한 이유로 변화하는 지방재정 운용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함. 특히 세입 증대가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경주해야 할 현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보조금 운영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2022년부터 중앙정부는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도 재정 압박은 물론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재정을 운용할 책임이 있음.
- 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은 물론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기관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의 실효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과업 대상

- 2023회계연도 민간지방보조사업

#### 내용적 범위

-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평가단 구성 및 사업 분석)
- 사업별 평가시행(유지필요성 평가 포함)
- 사업별 세출구조 조정(안) 제시
-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현황 분석 및 교부세 영향 검토
-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면접조사

## II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현황

### 1. 지방보조금 개요

#### □ 지방보조금 정의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제2조)으로 규정됨.
-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은 공공단체와 민간으로 구분되며 예산과목별로 민간 보조 8개 항목과 공공단체 보조 9개 항목으로 구분됨

[표 1] 예산과목별(편성목) 분류

민간보조(8개)	공공단체 보조(9개)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301-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301-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운수업계보조금(307-09)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1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308-09)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403-04)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 「지방보조금법」 상 운영 규정

-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운영 전반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교부 절차, 사업 수행, 관리, 반환과 제재, 보칙, 벌칙 등을 규정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 내용을 규정함.
- 「지방보조금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과 다른 목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제13조)임. 이에 따라 사소한 변경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 내용이나 경비 배분 변경 등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승인(제14조)을 받도록 절차를 두고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개인으로서 수행 상황 보고(제16조)와 함께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제17조) 의무를 지고 있음.
- 추가로 한 회계연도 내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을 교부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제17조)을 받아 실적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총액 10억원 이상을 교부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제18조) 해야 함.
-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지자체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치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자체는 제재 부가금이나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제35조) 할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갖게 됨.

## □ **운용평가 결과 환류 강조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

- 202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273호)」은 지방보조금 편성과 수행 집행점검, 운용평가와 관련해 강화된 기준을 제시함.
- 지방보조금 신규 편성 시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신규 사업을 평가하도록 해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성과부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신규사업 평가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 6’의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했으며 사업계획과 사업성과 평가 시 일정 점수 미달인 사업은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용평가는 매년 시행하는 성과평가와 지속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3년 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도록 함.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같지만 항목별 배점을 구분해 운영하도록 예시를 제시함. 운용평가 결과는 상대평가를 의무화 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철저한 환류를 강조함.
-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공모가 아닌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 등은 지자체장이 주요 점검대상으로 지정해 수행상황을 점검하도록 강화함.
- 지방보조금 삭감·지원중단·사업 폐지 등 환류 내역을 지방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한 점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시사하는 대목임. 지방보조사업 관리·감시를 지자체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명문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신규 편성과 운용평가 등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운용평가 결과를 차기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할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도 의의로 볼 수 있음.

## □ 2025년 변경 사항

- 2025년 지자체 예산편성 및 운영의 기준이 되는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하: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 함.
- 기존 기금 회계에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은 각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도록 해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가 이원화 되어 있었음. 이번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기금에 편성된 지방보조금 역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를 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편성부터 성과평가까지 운용 관련 모든 절차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야 함.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편성된 지방보조금 관리와 이원화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를 일원화한 것으로 지자체의 관리 영역과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 1) 2023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 세출결산액 2% 이내 민간 지방보조금 집행

- 2023년 결산 기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 교부액은 169,286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1.35%를 차지함. 지방보조사업을 구성하는 통계목 별로는 민간경상보조가 122,338백만원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액 중 가장 큰 비중(72%)을 차지함. 전체 세출결산액의 0.98%임. 이어 사회복지사업보조(0.16%), 민간단체운영비보조(0.11%) 순으로 교부 비중이 높음.
- 민간경상보조는 법정 운영비 보조나 행사사업을 제외한 사업 형태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함.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지원 목적과 필요성을 엄격히 하여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2]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계		169,286	1.35
민간경상보조(307-02)	12,511,556	122,338	0.98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3,483	0.11
민간행사보조(307-04)		3,088	0.02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5,440	0.0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0,636	0.16
민간자본보조 (402-01)		4,301	0.03

※ 출처: 인천시 2024년 재정공시(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3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11%… 세출결산액 증가율보다 높아**

- 최근 5년 간 지방보조금 교부액 연평균 증가율은 11%임. 민간 지방보조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2019년 111,624백만원에서 2023년 169,286백만원으로 증가함.
- 전년대비 증가율은 2020년 13.8%, 2021년 18.56%로 높은 수준으로 이어졌으나 2022년 2.14% 감소에 이어 2023년 1.32% 증가로 급격한 증가가 감소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을 보면 2019년 1.19%에서 2021년 1.05%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3년이 1.35%로 비중이 가장 높음.
-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감소세는 지방보조금 감소를 위한 지자체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은 세출결산액 연평균 증가율 및 세출결산액 규모 등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하며 지방보조금 관련 비중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3] 연도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연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9,351,789	10,642,421	12,617,810	12,348,207	12,511,556	7.5
지방보조금(민간)	111,624	124,426	131,946	157,086	169,286	11.0
비율	1.19	1.17	1.05	1.27	1.35	-
전년대비 증가율	-	13.80	18.56	-2.14	1.32	-

※ 출처: 인천광역시 2023년 재정공시 결산기준

## 2) 타지자체 비교

### □ 광역 자치단체 17 곳 중 13위로 민간 지방보조금 비중은 낮음

- 2023년 통합재정공시 결산기준 인천광역시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교부액 비중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 17 곳 중에서 부산광역시와 같은 13위임. 교부액 규모는 11위로 이보다는 약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동종단체와 비교하면 인천광역시는 세출결산액 규모에 비해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적은 축에 속함. 인천광역시보다 지방보조금 비율이 낮은 곳은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기도 등임.

[표 4] 특별/광역시 17개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세출결산액		교부액		비율(B/A)	
	금액(A)	순위	금액(B)	순위	비율	순위
서울본청	45,814,043	1	1,008,285	1	2.2	4
부산본청	15,136,806	3	204,678	5	1.35	13
대구본청	9,842,340	9	201,839	7	2.05	8
인천본청	12,511,556	6	169,286	11	1.35	13
광주본청	6,942,243	13	171,524	9	2.47	3
대전본청	6,223,533	15	98,829	16	1.59	11
울산본청	4,715,699	16	97,047	17	2.06	7
세종본청	1,987,858	17	143,740	13	7.23	2
경기본청	33,976,988	2	248,713	3	0.73	17
강원본청	7,916,875	11	172,264	8	2.18	5
충북본청	7,009,347	12	101,818	15	1.45	12
충남본청	9,871,308	8	105,940	14	1.07	16
전북본청	9,044,176	10	170,549	10	1.89	9
전남본청	10,784,007	7	227,356	4	2.11	6
경북본청	12,596,235	5	202,480	6	1.61	10
경남본청	12,607,237	4	153,395	12	1.22	15
제주본청	6,567,256	14	731,994	2	11.15	1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보조금 비율 재구성

□ **특·광역시 8곳 중 민간 보조금 비중은 최저 수준**

- 인천광역시 유사단체인 특·광역시 8곳만 비교하여도 지방보조금 규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세출결산액 규모는 상위 3위이지만 지방보조금 교부액 규모는 5위, 세출결산액 대비 교부액 비율은 공동 7위임.
- 인천광역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세출결산액 규모에 비해 지방보조금 교부액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교부액 절대 금액으로 보면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은 재정공시를 통한 비교이며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민간보조금 전체를 포함한 규모로 순 지방비를 지출하는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 대상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표 5] 특광역시 8개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세출결산액		교부액		비율(B/A)	
	금액(A)	순위	금액(B)	순위	비율	순위
서울본청	45,814,043	1	1,008,285	1	2.2	3
부산본청	15,136,806	2	204,678	2	1.35	7
대구본청	9,842,340	4	201,839	3	2.05	5
인천본청	12,511,556	3	169,286	5	1.35	7
광주본청	6,942,243	5	171,524	4	2.47	2
대전본청	6,223,533	6	98,829	7	1.59	6
울산본청	4,715,699	7	97,047	8	2.06	4
세종본청	1,987,858	8	143,740	6	7.23	1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보조금 비율 재구성

### 3) 지방보조금의 교부세 등 영향 검토

#### □ 민간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 미흡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에 영향

- 지방보조금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되는 자체노력 항목임. 인천광역시 2020년 11,644백만원, 2024년 24,723백만원 페널티를 받음. 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인천광역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자체노력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지방보조금 절감으로 볼 수 있음. 원인은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음.
- 첫째는 2024년 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는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기저효과와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예산 회복 영향이 큼. 둘째는 ‘자치구 산정 특례’ 영향임.

[표 6]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861	19,052	4,557	10,009	-31,277
인건비 건전운영	2,573	3,145	1,067	648	579
지방의회경비 절감	599	524	914	1,154	933
업무추진비 절감	1,510	1,416	2,398	3,972	2,00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891	1,296	7,318	-1,065	-2,748
지방보조금 절감	-11,644	7,187	2,764	13,042	-24,723
민간위탁금 절감	1,939	0	0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0	5,484	-9,904	-7,741	-7,321

※ 인천광역시, 각 년도 예산기준 공시, (+) 인센티브, (-) 페널티

※ 민간위탁금 절감은 2021년부터 자체노력도 측정항목 제외.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은 2021년부터 측정항목 포함

- 문제는 도가 자체분만 반영하는 데 비해 광역시는 자체분과 자치구분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점, 광역시가 자치구의 세출 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없다는 데 있음.
-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교부 시에도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지방교부세법」 제6조)하도록 한 ‘자치구 특례’ 제도 때문임.
- 즉 보통교부세 산정 시 광역시 산정분은 광역시 뿐 아니라 소속 자치구분을 통합하여 반영함.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 광역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시·군 산정방법과는 다른 특례를 적용가능 함.
- 이는 효율적이기는 하나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산정에 두 가지 구조적 취약점을 제공함. 첫째 광역시는 자치구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할 수 없음. 관할 권한 밖의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페널티를 광역시가 감수하는 방식으로 자치구 특례가 작용함. 특히 이는 세출 자체노력도 중에서 항목 특성상 행사·축제성경비 절감과 지방보조금 절감 등에 불리하게 작용함.
- 둘째 광역시와 같은 그룹에서 보통교부세를 분배받는 도는 관할권 내의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광역시와 다름.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자치구 특례’를 둔 이유는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제도 운영 중복을 피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해 운영한다는 차원임.
- 인천광역시는 2024년부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노력도 항목을 구성하여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두 분야로 운영하고 있음. 제도 도입 초반인 만큼 자치구 예산부서의 제도 변화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월등히 높은 지방보조금증감률이 재정분석에 영향**

-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지표로 지방보조금비율과 지방보조금증감률이 포함됨. 결산 기준으로 하는 재정분석의 가장 최신자료는 2024년 3월에 공개된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의 재정분석 지표임.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비율은 최근 3년 간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낮고 지방보조금증감률은 유형 및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임.
- 최근 3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지방보조금이 감소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2022년부터 지방보조금이 증가함. 인천광역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고 증가폭은 크게 나타나면서 지방보조금 증감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지방보조금 두 지표의 반영 비율임. 현재 상태(비율)와 개선도(증감률)을 동시에 반영하는 지방보조금 지표는 총점 산출 시 지방보조금 비율과 지방보조금증감률이 4대 6으로 적용되어 증감률 반영 비율이 높음. 비율에 비해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광역시에는 불리한 지표 산식임.
- 총점에서 차지하는 지방보조금 지표 비중 역시 증가해 2021년 4%에서 2022년 6%로 확대됨.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인천광역시도 증감률 관리가 필요함.

[표 기 지방재정분석의 지방보조금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유형평균	전국평균
FY2022	지방보조금비율	1.27%	2.03%	5.51%
	(지방보조금증감률)	19.05%	11.23%	10.38%
FY2021	지방보조금비율	1.05%	1.94%	5.23%
	(지방보조금증감률)	6.04%	1.33%	5.31%
FY2020	지방보조금비율	1.17%	2.39%	5.26%
	(지방보조금증감률)	11.47%	5.77%	6.98%

※ 행정안전부, 각 연도별 지방재정분석 결과

### Ⅲ.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 1. 운용평가 개요

### 1) 성과평가 근거

#### □ 법률

-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함(제27조 제1항 및 제2항).
-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유지필요성 평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7조 제1항 및 제2항).

#### [표 8]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조항

- |  |
|--|
|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상대평가 의무화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규정함. 2024년 1월 1일 개정 시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에 상대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해 다섯 개 평가 등급 별로 비율을 규정해서 평가하도록 함.
- 이에 따른 상대평가 비율은 등급별로 매우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미흡 5%로 배분되었으며 이는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에 공동으로 적용하도록 함. 행정안전부는 성과평가 등급의 비율을 준수하되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에 대해서만 비중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함.
- 엄격한 평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9] 「지방보조 관리기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조항**

<p>(① ~ ② 생략)</p> <p>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 ⑧ 생략)</p>
---

-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규정도 제시함. 매년하는 평가인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은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음. 매우미흡 등급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환류 규정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 사업 모두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지원중단·폐지 사업 내역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 역시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특징임.

**[표 10]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등급별 비율 및 활용**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비율	10%	20%	55%	10%	5%
성과평가	-	-	-	증액 금지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
유지필요성 평가	-	-	-	사업 폐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재심의	사업 폐지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2024.1.1.

## 2. 운용평가 결과

### 1) 운용평가 대상 사업 현황

#### □ 민간경상사업보조 223건으로 다수

- 2023 회계연도에 수행한 지방보조사업은 총 327건임. 당해연도 사업이 추진된 사업은 총 323건임. 이 중 성과평가 대상은 299건이나 연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4건을 제외한 295건을 최종 성과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 통계목별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19건으로 가장 많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7건, 사회복지사업보조 26건, 민간자본보조 14건, 민간행사사업보조 5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건 순임.
- 유지필요성 평가는 총 28건으로 미수행 사업은 없음. 통계목별로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년차가 되는 사업이 가장 많아 20건을 차지함. 이어 민간경상사업보조 4건, 민간자본보조 3건, 사회복지사업보조 1건임.

[표 11]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 사업: 통계목별

(단위: 건)

구분	대상 사업수	비대상
합계	327	
성과평가	295	4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19	4 (미시행)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27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5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307-10)	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6	
민간자본보조 (402-01)	14	
유지필요성 평가	28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2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	
민간자본보조 (402-01)	3	

□ **체육진흥과 사업 47건 최다… 이어 장애인복지과 32건 운영**

- 부서별 사업수를 보면 체육진흥과 사업이 47건으로 가장 많음. 모두 성과평가 대상 사업임. 이어 장애인복지과가 3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음. 성과평가 대상 사업이 31건, 유지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이 1건임.
- 유지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이 많은 곳은 예술정책과 8건, 노동정책과 4건, 인천대로개발과 3건, 소상공인정책과 2건 순임. 나머지는 모두 과별로 1건씩 유지필요성 평가 사업 대상을 운영함.

[표 12]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 사업: 부서별

(단위: 건)

부서명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부서명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합계			295		
청년정책담당관	1		건축과		1
정책기획관	3		인천대로개발과		3
교육협력담당관	2		복지정책과	1	1
총무과	2		투자유치과	1	
자치행정과	22	1	국제교류증진과	1	
보훈정책과	26	1	문화정책과	9	1
안전예방과	2		예술정책과	7	8
자연재난과	1		문화유산과	13	
환경기후정책과	1		체육진흥과	47	
자원순환과	4		관광마이스과	3	
환경안전과	2		복지정책과	8	
대기보전과	2		보건의료정책과	3	
수질하천과	2		장애인복지과	31	1
버스정책과	1		감염병관리과	3	
택시운수과	2		건강증진과	2	
경제정책과	4		위생정책과	2	
소상공인정책과	7	2	여성정책과	7	
사회적경제과	4		디아스포라유산과	2	1
노동정책과	11	4	노인정책과	17	
농축산과	2	1	영유아정책과	1	
산업정책과	7	1	아동정책과	4	1
에너지산업과	1		청소년정책과	1	
섬해양정책과	1		아동복지관	1	
항공과	1		농업기술센터	11	1
물류정책과	1		수산기술지원센터	2	
해양환경과	3		자치경찰정책과	1	
수산과	1		신성장산업유치과	1	

## 2) 성과평가 결과

### □ 통계목별 성과평가 결과

- 5개 등급으로 평가한 성과평가 결과는 매우우수 29건 10%, 우수 60건 20%, 보통 156건 53%, 미흡 35건 12%, 매우미흡 15건 5% 순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상대평가 등급 비율을 대체로 준수함.
- 미흡 등급이 12%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제안 수준인 10%를 상회하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미흡과 매우미흡 평가등급 비중을 낮출 수는 없지만 높이는 것은 엄격한 평가로 가능함.
-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이 많은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27건, 14건을 차지함. 이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체 보조사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될 수준은 아님. 이밖에 미흡 평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가 5건, 민간행사사업보조 2건, 민간자본보조 1건임.
- 통계목별로 보면 매우우수 사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미흡 평가 사업이 없음. 민간행사사업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는 매우미흡 평가 등급이 없음.
-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3]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통계목별

(단위: 건)

구분	총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295	29	60	156	35	15
(%)	100%	10%	20%	53%	12%	5%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19	18	45	115	27	1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27	2	10	14		1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5	1		2	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4	2	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6	2	3	16	5	
민간자본보조 (402-01)	14	4		9	1	

### 3) 성과평가 분야별 점수 배점

#### □ 사업계획 분야 득점 분포

- 행사·경상 사업보조의 사업계획 분야 성과평가 점수 평균은 20점 만점에  
서 13.5점임. 4개 평가항목에서 배점이 6점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1-4 자부담 비중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항목이 2.4점으로 가장 낮  
은 평균 점수를 보임. 자부담 비율로 책정한 해당 항목에 따르면 행사·경  
상 사업보조의 자부담 비율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이어 ‘1-2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가?’ 항목이 3.2점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보임. 지방보조사업자의 단체 목  
표와 이질적인 사업 구성, 사업 목표 및 목적과 달리 주민 참여를 유도할  
사업 기획이 미비하거나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축소 운영 등  
이 지적됨.
- 운영·복지 사업보조 성과평가의 사업계획 분야 평균점수는 20점 만점에  
15.6점임. 분야별 점수로만 보면 운영·복지 사업보조가 행사·경상 사업보  
조보다 계획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운영·복지사업보조는 ‘1-2. 보조사업자가 설립 목적(법령)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항목이 10점 만점에 7.2점을 받는데 그침. 보조  
사업자 단체 목표와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편성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  
록 관리가 필요함.

[표 14] 성과평가 사업계획 분야 평가결과

(단위: 건, 점)

평가항목	행사·경상 사업보조		운영·복지 사업보조	
	배점	평균점수	배점	평균점수
사업수	238		57	
소계	20	13.5	20	15.6
1-1	4	3.4	4	3.9
1-2	4	3.2	10	7.2
1-3	6	4.4	6	4.5
1-4	6	2.4	-	-

□ **사업관리 분야 득점 분포**

- 행사·경상 사업보조 사업관리 분야 성과평가 평균 점수는 40점 만점에 33.3점임. 운영·복지 사업보조 31.7점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만점을 받은 항목은 ‘2-6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항목으로 2점이 배점됨. 인천광역시 행사·경상 사업보조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비교적 빠르게 보탬e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1. 사업 내용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10점 만점에 평균 7.6점, ‘2-4.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은 완결성이 있는가?’ 6점 만점에 평균 4.7점을 득점해 저조한 성적을 보여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운영·복지 사업보조 사업관리 분야 성과평가 평균 점수는 31.7점이고 보탬e 시스템 도입(2-7 항목)도 행사·경상 사업보조 사업자에 비해 확산이 느림(평균 1.8점). 보훈단체 및 복지단체 등 부서 면접 조사 결과 다수 보조사업자 고령화로 인한 도입 지연으로 보여 추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사·경상(2-5 항목)과 운영·복지 사업보조(2-6 항목)의 결과 보고 서류 기한 내 제출은 2점 만점에 각각 평균 1.7점, 1.8점에 그침. 법 규정인 동시에 보조사업자의 성실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조항임. 2023회계연도는 보탬e 첫 시행 등으로 다수 사업에서 실적 및 정산보고 지연 제출하여 관리가 필요함.

[표 15] 성과평가 사업관리 분야 평가결과

(단위: 건, 점)

평가항목	행사·경상 사업보조		운영·복지 사업보조	
	배점	평균점수	배점	평균점수
사업수	238		57	
소계	40	33.3	40	31.7
2-1	10	7.6	10	7.5
2-2	10	9.0	10	9.2
2-3	10	8.3	5	4.3
2-4	6	4.7	5	3.4
2-5	2	1.7	6	3.6
2-6	2	2.0	2	1.8
2-7	-	-	2	1.8

## □ 사업성과 분야 득점 분포

- 행사·경상 사업보조 사업성과 분야 성과평가 평균 점수는 28.8점임. 만점 40점의 70% 수준에 그침. 행사·경상 사업보조의 성과는 ‘3-2.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환류 조치를 취하였는가?’ 항목이 점수가 10점 만점에 평균 6.3점으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보임. 지방보조사업자별로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거나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만한 현실적인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계획한 사업성과 달성(3-1 항목)은 15점 만점에 평균 11점. 계속 지원 필요성(3-3 항목)은 15점 만점에 평균 11.5점을 획득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임.
- 운영·복지 사업보조 사업성과 분야 성과평가 평균 점수는 30.2점임. 행사·경상 사업보조 평균 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운영됨. 이는 탈법 및 불법 등 큰 문제없이 수행되고 법정운영비 사업 계획 및 보고 등 관리 노력이 요구되는 구성 사업 특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 다만 운영·복지 사업보조에서도 ‘3-2.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환류 조치를 취하였는가?’ 항목이 점수가 10점 만점에 평균 6점으로 낮게 책정됨. 법정운영비나 복지사업보조 등에서도 다음연도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특히 법정운영비나 복지사업보조 등은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 지방보조금 자연증가분이 발생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낭비 예방과 예산절감 측면의 노력과 환류 조치 등에 대한 강구가 필요함.

[표 16] 성과평가 사업성과 분야 평가결과

(단위: 건, 점)

평가항목	행사·경상 사업보조		운영·복지 사업보조	
	배점	평균점수	배점	평균점수
사업수	238		57	
소계	40	28.8	40	30.2
3-1	15	11.0	15	11.7
3-2	10	6.3	10	6.0
3-3	15	11.5	15	12.4

#### 4)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 □ 통계목별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 총 28개 사업을 평가한 유지필요성 평가 대상은 매우우수 3건 11%, 우수 6건 21%, 보통 15건 54%, 미흡 3건 11%, 매우미흡 4%를 차지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상대평가 등급 비율을 대체로 준수한다고 볼 수 있음.
- 매우미흡 등급이 4%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매우미흡 등급 5%에 미달하기는 하나 총 사업수가 28건으로 비교적 적고 미흡 사업이 11%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기준 비율 10%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제도의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매우미흡 등급이 한 건 추가되는 경우 7%로 매우미흡 등급 기준과 차이가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통계목별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2건)와 사회복지사업보조(1건)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음. 우수 등급은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각 3건임. 보통 등급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건임.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각각 3건과 1건을 차지함.
-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사업수가 많아 다양한 평가를 받았으나 미흡과 매우미흡 모두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 관리가 필요함.

**[표 17] 2023년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통계목별**

(단위: 건)

구분	총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28	3	6	15	3	1
(%)	100%	11%	21%	54%	11%	4%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4	2		2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20		3	13	3	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	1				
민간자본보조 (402-01)	3		3			

## 5) 유지필요성 평가 분야별 배점

- 유지필요성 평가의 사업계획 분야 평균 점수는 25점 만점에 평균 18점임. 성과평가와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중(1-4 항목)의 점수가 6점 만점에 평균 3.9점으로 득점률이 가장 낮음.
- 지난 3년 간 사업이 유지되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보조사업 필요성(1-1 항목)이 대체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보조사업의 독창성(1-2 항목, 5점 만점에 평균 3.8점)과 보조금 규모 및 수혜범위(1-3 항목, 10점 만점에 평균 7점) 점수가 비교적 낮아 관리가 시대 변화에 따른 사업변화를 수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관리 분야는 25점 만점에 20.6점으로 평가됨. 보조금 관리 운영 측면에서 보조금 정산서 기한 내 제출(2-4 항목, 2점 만점에 평균 1.6점)과 최근 3년 간 보조금 규모의 안정성(2-5 항목, 3점 만점에 평균 1.9점) 측면에서는 관리가 필요함. 특히 보조금 규모 안정성은 급격한 지방보조금 교부 규모 증액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함.
- 사업성과 분야는 50점 만점에 평균 38.3점을 획득하는 데 그침. 20점 만점인 ‘3-1. 최근 3년 평가 점수 종합’의 점수 득점률이 15.9점으로 가장 낮음. 해당 항목은 각 지방보조사업이 최근 3년간 득점한 점수를 연도별 가점치를 적용해 합산함. 당해연도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득점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점수가 높지 않음. 최근 3년 평가 점수는 꾸준한 점수 관리를 통해 사업 유지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항목의 의미가 있음.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 또한 미흡이나 매우미흡 등 평가결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휴식제 등 조치를 취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런 환류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시정발전 기여도(3-2 항목) 측면의 점수도 15점 만점에 평균 10.7점으로 낮은 편으로 측정됨. 지속 수행하는 사업일수록 사업에 적절한 변화 및 재구성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계속 지원 필요성(3-3 항목)에 대해서는 15점 만점에 평균 11.6점을 득점함. 대체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매우미흡 사업이나 미흡 사업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환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표 18] 유지필요성 평가 분야별 평가결과

(단위: 건, 점)

평가항목	배점	평균 점수
사업수	28	
사업계획 소계	25	18.0
1-1.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	3.3
1-2. 보조사업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5	3.8
1-3. 보조사업의 보조금 규모 및 수혜범위가 적정한가?	10	7.0
1-4. 자부담 비중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6	3.9
사업관리 소계	25	20.6
2-1. 사업 내용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5	4.4
2-2. 사업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	5	4.5
2-3. 보조금을 부적정하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10	8.3
2-4. 보조금 정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2	1.6
2-5. 보조금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3	1.9
사업성과 소계	50	38.3
3-1. 최근 3년 평가 점수 종합	20	15.9
3-2. 보조사업이 효과적이고 시정발전 기여도가 인정되는가?	15	10.7
3-3.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15	11.6



## IV. 지방보조금 정책 제언

### 1. 지방보조금 계획 및 편성

#### □ 자치구 지방보조금 운용과 연계성 강화 필요

- 인천광역시는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자체노력도 측정 시 ‘자치구 산정 특례’에 따라 자치구분을 합산하여 반영함. 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와 보통교부세 제도 중복에 따라 ‘자치구 산정 특례’를 둔 것임.
- 이에따라 인천광역시는 2024년부터 자치구 지방보조금 관련 운용 책임과 권한을 배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연동한 제도를 운영함.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건전재정 자체 노력’ 조항을 두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와 같은 항목과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함.
- 다만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지방보조금의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반영하여 해당 변경 사항을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건전재정 자체노력 조항에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19] ‘지방보조금 항목’ 반영률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기준 반영률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기준 반영률
50%	100%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 □ 지방보조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부담 확대

- 「지방보조금법」과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다수 지방보조금 운영 문서는 지방보조금 편성 시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하도록 권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예산 세출의 한 방식이나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적고, 민간사업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지방보

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고려하면 자부담 편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부담 편성 비율을 10%로 제시한 현재 수준에서 자부담 편성 의무 및 관리(표기 등) 강화를 통해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모든 지방보조금 서류를 수기로 관리했던 과거와 달리 보탬e 도입으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조사업자 유형(기업, 단체, 개인 등)에 따라 30~50% 등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하면 수혜범위가 작은 개인의 보조율을 가장 높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구분을 통한 적절한 통계목 편성

- 지방보조사업과 유사한 통계목으로는 민간위탁, 행사운영비, 용역 계약 등이 있음. 지방보조금과 타 통계목 적용의 가장 큰 구분 점은 사업 수행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임.
- 물론 이는 법에 규정된 사업수행 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지자체가 사업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 세출 예산 지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음.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라도 지자체 별로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보조금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 산정에서도 지방보조금을 페널티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통계목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 구조 변경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보조금 규모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 법정운영비 지원 단체 총액인건비 편성 추진

- 지방보조금은 법정운영비 지급 대상에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 기준은 없는 상황. 지방보조사업자별로 각 단체의 중앙단체 기준 혹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개별로 제시하며 협상력으로 지방보조사업자별 임금을

체계를 운영함.

- 단체 및 법인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준수, 단체별 임금 불균형, 상근직과 비상근직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예산 편성 시마다 단체별별도 협상 등 다양한 부작용과 행정력 낭비 발생. 인천광역시의 지방보조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자체 보수표에 따자 자동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례) 경기도 시흥시는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통계목에 적용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함. 시흥시는 1단계 2016년 도입기-임금 정상화 단계, 2단계 2017년 성숙기- 임금 형평화 단계, 3단계 2018년 완성기-임금 안정화 단계, 4단계 2020년 성숙기-임금 효율화 단계, 5단계 2023년 도약기에 접어 들.
- 시흥시는 이를 통해 단체별 별도 인상 요구 및 기관장 인상 요구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응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관내 공익적 보조단체 인건비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킴. 고용안정 효과도 얻게 됨. 지자체로서는 연도별 지방보조금 운영 예산의 안정적 추계가 가능해 재정 운용의 계획성이 높아짐(행정안전부, 2023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표 20] 시흥시 지방보조금 총액인건비 적용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급여 인상폭	내부기준 (기본급)	전년 기본급 기준		대비전년도 실지급 인건비총액 기준 대비			
	90% 이상	5.9% 이내	5.2% 이내	6% 이내	5.93% 이내	3.55% 이내	4.16% 이내
명절휴가비	기본급 80%	기본급 100%	기본급의 120%				
가족수당	1인 2만원	공무원 가족수당 기준 반영					
연차수당	규정 없음			연차 사용 촉진제			
시간외수당	최대 5시간 (산출단가: 7,000원)		최대 20시간 (산출단가: 8,000원)		보상휴가제 도입		
4대보험 퇴직적립금	보수(기본급) 기준 적용 보험료 및 적립금 적용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재정대상 우수 사례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지방보조사업은 그동안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함. 국회, 감사원, 국책 연구소 등 사업을 평가·심사하는 기관마다 유사·중복성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 이에 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에서 유사·중복사업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함. 이에 준한 운영이 필요함.

[표 21] 지방보조금 유사·중복 평가 기준

구분	유형 1	유형 2
내용	국고보조사업 및 도보조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기초 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 폐지	한 지방보조사업자가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2건 이상 수행하는 경우. 유사한 목적 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 통폐합
사례	국고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상담 프로그램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도우미 상담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상담'이라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지방보조사업 폐지 권고	한 사업자가 '홍길동 추모사업', '홍길동 탄생 기념 문학사업', '홍길동 기념 음악제' 등 추모 목적 사업을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 통폐합 권고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 2. 지방보조금 집행

###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안 마련

- 지방보조금 사업 편성 시 예산 편성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지방보조사업 지출 항목 중 식비, 현수막, 단체복 구입 등 예산은 사업별 특성과 상관없이 공통 비용 적용이 가능함.
- 특히 식비와 단체복 등 항목은 지방보조사업자별로 특정한 이유 없이 편차가 크고 지방보조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관리가 필요함. 식비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관리 훈령」 기준을 적용함.
- 단체복은 편성 가능한 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제복, 정복 등을 갖추어 입을 필요가 없는 체육행사, 봉사활동 등에서는 조끼와 모자 등 간소한 복장을 기준으로 편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년 내 대회별·종목별 등 참가자가 특정되지 않으나 입·퇴장과 시상 등 불가피하게 통일된 복장이 필요한 체육 행사 등에서는 점퍼류보다는 조끼 등으로 통일성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함.
- 연중 회원 구성 변경이 거의 없는 지방보조사업에서 매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복 구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주문 제작을 통해 단체별 고유 디자인을 마련하여 일괄 구매하고, 매년 구입 물량은 동일 디자인으로 신규 회원 물량만 소수 구매하는 방식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중 강사비 등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이나 인천광역시청 예산편성 기준에 준해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보조사업 성과 목표 제시 및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지방보조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사업별로 지자체 주민 전체 혹은 특정 계층 등이 됨. 지방보조사업자가 최종 수혜자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 다수의 공익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임.
-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체평가와 함께 최종 수혜자의 만족도 평가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지방보조사업 교부 시 해당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최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적보고 시 지방보조사업 최종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하도록 관련 규정에 포함하고 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음은 최종 수혜자의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샘플임.

[표 22] [샘플] 지방보조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측정
행사에 대한 인지	1. 본 사업은 홍보한 목적에 맞게 내용이 구성되었는가?	5점 리커트 척도
	2. 본 사업은 홍보한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가?	5점 리커트 척도
행사 만족도 조사	3. 내년에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5점 리커트 척도
	4. 내년에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5점 리커트 척도
	5. 본 사업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는가?	5점 리커트 척도
	6. 본 사업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는가?	5점 리커트 척도
	7. 본 사업 주최 측이 사업을 무리 없이 운영했다고 보는가?	5점 리커트 척도
지방보조금 인지	8. 귀하가 참여한 교육/행사가 인천광역시의 '20XX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5점 리커트 척도
	9. 인천광역시가 본 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는가?	5점 리커트 척도
	10. 인천광역시가 본 행사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5점 리커트 척도
설문응답자 기초통계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 □ 지방보조금 집행 절차 등 관련 법령 준수

-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본으로 운영함.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은 이에 대한 해설과 감사 사례 등을 담고 있음. 지방보조사업 운영 담당 공무원은 물론 지방보조사업자도 참고할 만 함.
-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교부신청 및 사용, 사업 관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별표, 서식은 ‘보탬e’의 지방보조사업 관리 및 명칭부여 기준, 운용기준,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은 물론 성과평가 기준, 유지필요성 기준 등에 대한 기준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회계관리는 「회계관리 훈령」을 참조하여 편성함. 그 밖의 운영 관련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타 지자체 사례와 감사 사례 등도 지방보조금 운영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됨.

### 3. 지방보조금 정산

#### □ 성과평가 결과의 적극적인 환류

-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성과평가 결과 평가 등급이 미흡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증액을 금지하여야 함. 재량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성과평가 결과 평가 등급이 매우미흡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경우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 사업 폐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전과 달리 사업 평가 결과를 명확히 차기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함.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변경한 후 해당 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평가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 주요 점검내용은 평가지표 분야별 배점 준수, 운용평가 평가등급별 비율 할당,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의회 제출 여부 등임. 해당 내용에 대한 준수 필요.
- (사례) 도내 강릉시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변경 이전부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상대평가를 적용함. 적용 대상은 부서 단위 상대평가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2년 연속 미흡 등급은 1년 예산편성 금지 조치를 취함. 매우미흡 등급은 1년 간 예산편성을 중단함.
-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 등을 철저히 수행, 보조금 환수 및 교부결정 취소 등도 엄격하게 운영함.

[그림 1] 강릉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처분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중국자매도시 초등학교 영어연수 및 문화탐방 지원 사업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강릉지회	1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능으로 사업 포기	21.05.11.	교부결정 취소(10)
중국 연변자치주 조선족소학교 학습 기자재 지원사업	주문진 청년회의소	5	코로나19로 인한 물품 통관 및 입국절차 사유로 사업 포기	21.10.21.	교부결정 취소(5)
2020년 강릉화산오륙대기 전승육성사업	강릉화산오륙대기보존회	11.0	증빙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인정 금액 환수	21.12.31	보조금 환수 명령 (2.9)
2020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강릉화산오륙대기보존회	12.5	집행잔액 및 증빙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인정 금액 환수	21.12.31	보조금 환수 명령 (2,3206)
2021년 강원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	9현지마을회(조영택)	10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위반	22.4.12	보조금 환수 명령 (10)
해양패러스포츠 교육프로그램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76	승인없는 보조사업 비목 변경 사용	21.12.28.	보조금 환수 명령 (1)
2021년 전기자동차보조금지급	안○판	24	차종 변경 및 우선순위(소상공인)재접수로 인한 신청취소(포기)	21.3.17	교부결정 취소(24)
2021년 전기자동차보조금지급	이○돈 외 5	45	교부결정 중복으로 인한 취소	20.12.31등	교부결정 취소(45)
2021년 전기자동차보조금지급	곽○농 외 5	144	신청취소(포기)	21.12.28	교부결정 취소(144)
2021년 전기자동차보조금지급(사코이철)	황○익 외 7	216	신청취소(포기)	22.1.18등	교부결정 취소(216)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김○호	9	엔진교체 불가능 건설기계	2021.6.18	교부결정 취소(9)
2021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장○근 외 16	71	포기	2021.7.26등	교부결정 취소(71)
2021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김○수 외 19	72	장치 장착 불가 등	2021.7.26등	교부결정 취소(72)

※ 강릉시, 「2022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2022.11.10.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객관성 강화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강화가 요구됨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운영 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별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1단계 부서평가는 다양한 이유로 온정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높음. 변경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 해당 상대평가 및 등급별 의무 비율 준수 기준을 부서 단위로 확대 적용해 엄격한 상대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2단계 예산부서 평가는 각 부서별 평가를 종합하고 형평을 맞추는 동시에 전반적인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중요한 평가임. 현실적 한계 상 2단계에서 엄격한 평가를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작용함. 외부 역량을 활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 가능함. 외부역량은 크게 지역 내 자원 활용과 전문가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3]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 조건 비교

구분	지역 내 자원 활용	외부 전문가 활용
내용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지방보조금성과평가 위원 참여. 혹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위원 구성을 통한 사업평가	외부 전문기관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장점	지역 내 자원과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서류 외 정보 획득 가능	지방보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고 타지자체 다양한 사례에 준해 평가 가능
단점	객관성 부족 우려	지역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미흡
사례	충청북도 옥천군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읍·면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평가 개선방향 모색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 지자체

□ **중요재산 관리 강화**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한 재산 (중요재산)을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함. 중요재산 현재액과 증감액을 보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해야 함(「지방보조금법」 제21조)
-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지방보조사업자가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음. 때문에 중요재산을 지정해 관리해야 함
- 시에서는 중요재산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재산 확인 절차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중요재산 관리 시에는 관리 대상 목록 설정과 함께 내용연수를 고려해 관리 해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요재산 관리는 중요재산 지정 설정 기준 마련, 신규 취득 재산 등록, 현재액과 수량 증감 보고, 운영 관리, 처분, 공시 등 단계별 운영 기준 및 현행화 관리가 필요함
- 중요재산 운영 관리 대상 및 사용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24] 중요재산 관리**

구분	내용
처분 제한 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중요재산
사용 제한 사항	교부 목적 외 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사용 제한 사항 예외	지방보조금 전액 반납, 내용연수 경과, 기타

※ 출처 : 「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재구성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 건영빌딩 5층

TEL. 02-336-0619 FAX. 02-336-0619